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31095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이재영, 나윤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정재진, 조소진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2564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8. 4. 2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 접수 제154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454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3. 29. “C은 원고에게 14,356,91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3. 4. 18.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4. 28.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를 두고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경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할협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 접수 제154042호로 ‘2018.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피고는 망인과 1979년경 결혼한 후 함께 가내수공업형태로 장갑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하였고, 망인이 2003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간병과 식단조절을 해주면서 장갑 만드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망인이 우울증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대부분의 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분은 70% 이상이다.
- 2)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C을 위하여 신용카드 미납대금 약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C에게 약 10년 4개월 동안 매달 약 1,000,000원 이상씩 최소 합계 124,000,000원을 생활비로 증여하였으며, C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2006년경 합계 177,113,000원을,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6,200,000원을, 2017. 4. 4. 2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 3) 피고와 E는 망인이 사망한 후 C에게 상속재산에서 자기앞수표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이는 C의 망인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또한 C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채권을 갖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결정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와 을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04. 3. 8.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후 2016년까지 외래 추적관찰을 받아왔고, 2014. 11. 8.부터 2018. 4. 9.까지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상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5. 3. 1. 류마티스 진단등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 C은 몇 차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C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와 결혼하기 전인 1971년경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이다.

② 망인은 2004년경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피고의 간호, 요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장갑공장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의 행위가 통상 부부로서 부담하는 1차적인 부양의무를 이행을 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특별한 부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C에게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을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E가 망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중에서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C에게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다. 설사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게 됨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C의 악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C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세리,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부동산의 표시

1. 대구 수성구 H 대 135.7㎡

2. 대구 수성구 H

 [도로명주소] 대구 수성구 I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아스팔트형글잇기지붕 단독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창고 80.15㎡

 1층 조적조 주택 74.72㎡ 끝.